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송명화 의원 외 20명
- 나. 의안번호: 제2563호
- 다. 발의일자: 2021. 8. 10
- 라. 회부일자: 2021. 8. 18

2. 제 안 사 유

-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한강 수상레저시설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안전관리계획 수립,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입법 취지 및 필요성

-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국내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도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음.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진기관이 부착된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레저 활동보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역시 높아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상레저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2) 세부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총 1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한강 수상

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시 시민들이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한강 사업본부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3항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즉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상응하며,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근거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수상레저시설 위반사항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고 발	과태료	개선명령	현장시정
2020	234	1	17	161	55
2019	374	-	6	296	72
2018	471	-	2	241	228

- '20년 고발 건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무허가 수상레저 영업행위 적발)

- 안 제6조는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서 시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강행 규정이 아닌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운영비 지원이나 특정 단체 지원 등의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한강 내 최초 공용 계류장 및 교육·훈련용 수상레포츠 통합센터가 조성 중에 있으며, 매년 수상안전 교실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고 있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시설 현황〉

구분	규모	주요기능	시설 배치
수상계류장	523㎡/70척	계류 및 훈련	요트, 보트, 조정, 카누 등 정박·계류
육상계류장	5,000㎡/ 150척	선박 보관	보관장 1(2,260㎡), 보관장 2(2,740㎡)
통합지원센터	1층, 611.4㎡	교육 및 편의시설	교육장,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 화장실 등
	2층, 615.5㎡	휴게공간	커뮤니티룸(휴게공간), 창고 등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감도〉